

# 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수진기업 모집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 - 0053호

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, 소셜 임팩트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」 수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2. 4. 11.

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

1

##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사업 개요

- ☐ 본 공고는 컨설팅기관과 매칭을 완료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한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“전문컨설팅(자율형)”에 신청 공고임
  - 컨설팅기관 매칭 등 컨설팅 준비절차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“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사전진단 신청 공고” 참조

### 가. 사업 목적

- ☐ (예비)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경영 할 수 있도록 지원
  - (자율형 컨설팅)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주제와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신청
  - (22년 추진방향) 사업 전략, 판로, 자금연계 등 기존 컨설팅 주제 및 기업 소셜 임팩트 측정 및 제고 관련 주제 적극 발굴
    - (소셜 임팩트 측정 및 제고) 기업의 소셜 임팩트 측정, 소셜 미션 고도화, 민간협력 유치를 위한 ESG 진단·개선 등

### 나. 지원 내용

- ☐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흥원의 컨설팅기관 Pool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○ 신청기업(수진기업) 규모에 따른 구분

- (지속성장형) 단일 기업의 경영/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신청 기업의 경영 현안에 대한 집중적 컨설팅 지원
- (공동형) 동종·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10개 이하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

\* <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>은 별도 공고 통해 모집, 컨설팅 비용과 공동 사업비 지원

○ 수진기업 신청 전 준비 절차

- (자율매칭) 사회적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기관을 사전에 섭외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, SEIS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
- (사전진단) 컨설팅 주제 선정 및 컨설팅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전문 진단을 거쳐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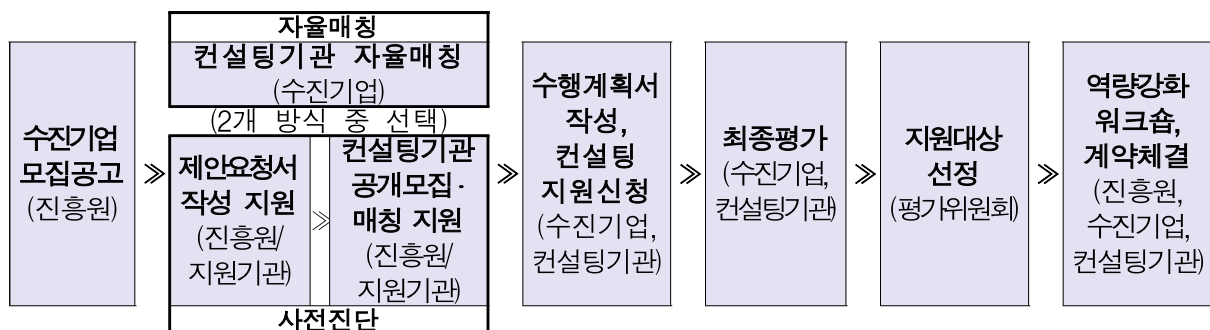
\*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“1) 기업 상황 진단 → 2) 컨설팅 주제 진단 → 3) 컨설팅기관 매칭 지원” 과정 전체 또는 선택적으로 지원

○ (지원내용) 금액의 한도 없이 컨설팅 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, 기업당 연 1회, 누적 5회까지 지원

- ※ 단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,000만 원 이내 지원(최대 지원 횟수는 동일)
- ※ 1회 이상 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업일 경우 이전에 지원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- ※ '22년 표준형, 자율형, 협업활성화 컨설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
○ (연계사업 정보 제공) 컨설팅 이후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, 부처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

<자율형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요>



## 2

##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수진기업 공모 내용

□ (지원 대상) 총 예산 680,000,000원 내외, 60개 내외 과제 지원

| 구 분   | 지원 대상            | 컨설팅 내용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속성장형 | (예비)사회적기업        | 경영·기술 전 분야의 심화 과제        |
| 공동형   | 2~10개의 (예비)사회적기업 | 동종/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|

○ (우대 가점) 최대 5점 부여(공동형은 적용하지 않음)

| 점수 | 가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</li> <li>■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</li> <li>■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</li> <li>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(기본·확장공시)에 참여한 신청기업</li> <li>■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</li> <li>■ 자율형 경영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</li> <li>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신청기업</li> </ul> |
| 3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단,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·접수 마감일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,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(사후제출 불가)

\*\* 3점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“【별지 제3호 서식】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”를 해당 유관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첨부

□ 지원 조건

| 구 분   |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부담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기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지속성장형 | 제한 없음<br>(단,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,000만 원) | 계약(신청)금액에 따라 10~40%<br>(세부 계산방법 산출방식 참조) | ~11.04.  |
| 공동형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※ 신청기관은 2022년 11월 4일 이전까지 컨설팅 과업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수행계획과 예산 규모를 수립하여야 함

○ 사업 예산 및 자부담 산출방식

| 총사업비     | 자부담 비율 | 최대 기업부담 | 산출방식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500만원 이하 | 10~40% | 50만원    | 컨설팅 계약금액 × 10%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0만원 ~<br>1,500만원 이하   |  | 250만원      | {50만원 + (500만원 초과금액 × 20%)}    |
| 1,500만원 ~<br>2,500만원 이하 |  | 550만원      | {250만원 + (1,500만원 초과금액 × 30%)} |
| 2,500만원 초과              |  | 산출식에<br>따름 | 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 × 40%)} |

○ (예산 산출) “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× 컨설팅 투입일(MD)”의 총 합계

※ 컨설팅 과제 총 비용에 비례하여 기업 부담금액이 달라짐을 인지하여 반드시 별첨하는 “자부담금액 계산기.xls” 사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확인

※ 단, 긴급재난의 직·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
- 기타 진흥원장 또는 경영컨설팅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 할 경우

□ (신청·접수 마감) **공고일 ~ 4. 27. (수) 17:00 까지**

○ (방법)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

※ 신청 방법은 “컨설팅 신청 매뉴얼.pdf”(별첨) 참조, 신청 마감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마감 2~3일 전 신청 요망

○ (유의사항) 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섭외하여 매칭 하여야 함

○ 구비서류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컨설팅 신청서 【별지 제1호 서식】 (온라인 작성) 1부 ★              |
| 2. 신청기업 컨설팅 수요 기술서 【별지 제2호 서식】 1부 ★               |
| 3.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 【별지 제3호 서식】 1부 (해당사항 있는 경우)    |
| 4. 수행계획서 【별지 제4호 서식】 1부 ★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【별지 제5-1호 서식】 【별지 제5-2호 서식】 각 1부 ★ |
| 6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【별지 제6-1호 서식】 【별지 제6-2호 서식】 각 1부 ★ |
| 7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★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(결산이 완료된 최근 회계연도부터 3개년) ★    |
| 9.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각 1부 (해당사항 있는 경우, 공동형 미적용)   |
| 10. 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【별지 제7호 서식】 1부 (공동형의 경우만)         |

- ※ 5번, 6번 서류는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 서류를 함께 압축(zip)하여 첨부
- ※ 2번, 3번 서류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출 서류 첨부 칸이 없는 서류들은 “그 외 제출서류(기타)” 항목에 압축(zip)하여 첨부
- ※ ★표시는 모든 신청기업/컨설팅기관 필수 제출 서류

### 3

##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□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컨설턴트 1일 기준 단가에는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VAT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-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, 컨설팅 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(2등급 이상)가 담당하여야 함
-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%이상이어야 하며,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,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(단,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현장 투입일의 50%(전체 투입일 35%)까지 비대면 화상 컨설팅 활용 가능)
-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
- 참여 컨설턴트는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
-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% 이상 참여하여야 함.
-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% 이내에서 인정  
(단, 공동형 컨설팅의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쳐 40% 초과하여 인정가능)
- 참여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, 아래의 경우 면제 가능
  - 진흥원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중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  - 직전년도 컨설팅 수행결과 종합 점수가 상위 10%인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- 교육자료 개발, 매뉴얼 개발,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, 단순 유통채널 확보,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.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

#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
- 당해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진기업
- 당해연도 컨설팅기관으로 수행 중인 경우
-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(최대 5회)

-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 
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
-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(컨설턴트)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
-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)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- 나)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 - 다)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- 라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  - 마) 단,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 
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

## 4

## 수진기업(지원대상) 선정 절차

### □ 선정 일정

- 신청한 컨설팅 주제 및 과업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 
책임자가 참여하는 최종평가(PT평가)를 거쳐 수진기업 선정 실시
  - ※ 공고 종료 후 1주 내외에 PT평가 실시 예정(구체적 내용 신청기업 개별 추가 안내)
  - ※ 단,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PT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 
있으며, 이에 따라 PT평가 일정 조정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
  - ※ 최종 PT평가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체적 안내 별도 공지
- (결과발표)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
- (유의사항) 평가 시 사회적기업(총괄책임자)과 컨설팅기관(과제  
책임자)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 
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
  - ※ 선정평가 시 사회적기업의 대표(또는 지정한 대리인)가 정당한 이유 없이  
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# □ 선정 방법

- (최종선정)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 
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점(최종평가 점수+우대가점) 고득점 순위에  
따라 수진기업(지원 대상)을 선정함

-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컨설팅 내용 및 기간,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 수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

#### ○ 선정 기준(표)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|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(총괄책임자)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정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|
| 총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## 5

## 선정 이후 행정 사항(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)

## □ 최종 수진기업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절차

## ① 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

- 수진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 대상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숙지 사항, 컨설팅 효과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

## ② 진흥원·수진기업(사회적기업)·컨설팅기관 간 수행 협약 체결

- 진흥원·수진기업(총괄기업)·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체결

※ 총 수행 협약기간: 2022.11.30.까지(최종평가 및 정산 등 행정절차 포함기간)

## ③ 컨설팅 착수 및 수행

※ 컨설팅 과제 투입은 2022.11.04.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

## ④ 모니터링 및 점검(진흥원, 운영지원기관)

-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 일정 및 컨설팅 계획을 바탕으로 컨설팅 진행 경과에 대한 정기·상시 점검 실시

## ⑤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 확인 및 비용 지급

-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중 진행 경과 관리, 중간·완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 실시

## ⑥ 컨설팅 비용 지급

- 진흥원은 컨설팅 비용 총액 70% 이내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을 거쳐 잔금을 지급함

## ⑦ 자치단체, 부처별 사업 연계 정보 제공

-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, 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



□ 추가 공고 및 지원사업 선정 규모

-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 공고 실시 가능
- '22년 총 60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
- \* 총 예산 680,000,000원 내외(수진기업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금 기준)

□ 문의처

- (공고 및 사업 수행 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성장팀
- 031-697-7852 / jwhong@ikosea.or.kr
- (접속장애 및 로그인 등 오류 문의)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
- 1661-4006

□ 기업 정보 및 컨설팅 사업 내용 관련 활용 안내

- 진흥원은 본 사업 참여 기업의 정보\*를 바탕으로 연계사업 정보 제공, 우수 컨설팅 성과 또는 사회적가치 사례 발굴·확산 등의 사업성과 및 제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
- \*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사업 개요, 컨설팅 과제 성과 등

※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(예비)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을 준용하며, 공고사항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있음

## 참고 1

## 2022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
| 유형    |        | 표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속성장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내용 |        | 경영현안 해결 및 경제적·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 제공               | 경영·기술 전 분야의 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·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해결지원 |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공동의 성장 전략 구축지원 |
| 선정 방식 | 주제     | 분야별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자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컨설팅 기관 | 분야별 컨설턴트 매칭<br>※ 수행사 1개소 사전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자 선택<br>(진흥원 Pool에 등록된 컨설팅기관, 협업활성화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우대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프로세스   | 컨설팅기관 선정→사전진단→자문검토회의(최종평가/매칭)→선정→개별 컨설팅                | 사전상담→컨설팅기관 매칭(자율매칭/사전진단-매칭 中 선택)→최종평가→선정→개별(공동)컨설팅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선정 심사  |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주제-컨설팅기관-컨설팅계획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범위 |        | 1 ~ 6백만원 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한없음<br>(협업활성화: 컨설팅 비용+공동사업 추진 실행비용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한도 |        | - 총 5회(연간 1회 지원 제한)<br>-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,000만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 부담 |        | -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총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기업 부담금액                    | 산출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~40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계약금액 × 10%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500만원 ~ 1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50만원+(500만원 초과금액×20%)}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1,500만원 ~ 2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250만원+(1,500만원 초과금액×30%)}      |
|       |        | 2,500만원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×40%)}    |

※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

## 참고 2

## 자율형 컨설팅 추진 절차

| 단 계                  | 수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설팅기관 등록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 신청(컨설팅기관→진흥원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상담 실시(신청기업→지원기관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 매칭지원(지원기관→신청기업)</li> <li>○ 수행계획서 작성(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)</li> <li>○ 경영컨설팅 신청(신청기업→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|
| 최종평가<br>(대면, PT평가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(신청기업, 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선정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합 평가 점수를 산정(대면평가 점수+우대가점)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 체결 및<br>사업착수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흥원,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</li> <li>○ 착수금 지급(수진기업→컨설팅기관)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간 보고 및<br>중간(수시) 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중간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완료 점검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료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완료보고서,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(진흥원)</li> <li>○ 만족도 조사(수진기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비 지급 통보(진흥원→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(컨설팅기관, 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 가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료점검 점수(70%)+만족도 점수(30%)</li> </ul> </li> <li>○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</li> </ul> |

### 참고 3

### 수진기업 선정 평가표

####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선정 평가표

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신청기업명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평 가 일 | 20 . . . . . | 평가위원 | (서명) |

| 평가구분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평 가 지 표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     |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(총괄책임자)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    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절성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| / 10    |
| 소 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/ 60점 |
| 가점사항<br>(공동형은 미적용)  | (진흥원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가점사항 집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/ 5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/ 100   |
| 평가의견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 참고 4

## 컨설턴트 등급 및 기준

### □ 학력 및 경력기준

- 컨설팅 수행이력의 증빙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한다.

| 등급 | 학력 및 경력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

\* (예시) “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자”의 경우, 박사학위 취득 사실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6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이력이 있으면 인정

### □ 자격 및 경력기준

| 등급 | 자격 및 경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노무사, 기술사, 세무사,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,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노무사, 기술사, 세무사,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,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회계사, 세무사, 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변리사, 기술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

### □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

| 등급 | 자격 및 경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사·노무, 세무·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</li> <li>•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(전임강사 이상), 정부출연(연) 재직자(선임급 이상),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(경력 10년 이상),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(연구경력 5년 이상)인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대표(경영책임자 포함)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(경력 5년 이상)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대표(경영책임자 포함)로 2년 이상 근무한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